

4 (第81回—第1次)

택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세종문화회관장, 교통방송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지하철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이상 공무원

4. 서울特別市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對한行政事務調查計劃承認의件

(15時 27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行政事務調查計劃 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李廷義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廷義議員 새정치국민회의 所屬 財務經濟委員會 李廷義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採擇한 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 行政事務調查計劃書에 대하여 報告 밀씀드리겠습니다.

同 計劃案은 지난 第80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에서 本議員 外 53名이 發議 要求하여 採擇된 바 있는 案件으로, 우리 委員會는 그 동안 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活動을 통하여 提起된 서울特別市 資金運用과 金庫運用實態 등을 보다 深度 있게 과학 조사하기 위하여 1995年 10月 12日 第80回 臨時會閉會 中 第4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催하여出席委員 全員 滿場一致로 同 計劃案을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게 되었습니다.

同 行政事務調查는 우리 委員會에서 1995年 10月 16日부터 同年 12月 30일까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7條의3第1項第1號 및 第5號에 정하고 있는 서울特別市 財務局과 서울

特別市金庫를 對象으로 하여 資金運用實態와 市金庫 業務에 대하여 調查하되 資金運用現況 및 實態, 月別 資金運用計劃 및 執行內譯, 公共預金, 定期預金의 期間別, 利子率, 利子額現況과 定期預金의 中途解止 件數, 金額 등의 事由를 규명하고, 商業銀行과의 市有財產貸借契約關係, OCR센터 設置經緯 및 運營事項 등 우리 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部分에 대하여 重點調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地方自治法 第36條에 의거 調查와 關聯된 報告要求, 現地確認, 書類提出要求, 證人, 參考人 등의 出席要求 및 檢證의 方法으로 調査하고, 調査過程에서 必要時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金融專門家 및 金融從事者, 市議員, 關係公務員을 포함한 公廳會를 實施하여 市金庫運用의 制度改善을 모색하는 方向으로 정하였으며, 調査活動을 效率的으로 進行하기 위해서 小委員會, 또는 班을 構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内容은 配布하여 드린 計劃書案을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採擇한 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計劃書에 대한 審查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特別市 資金運用實態와 서울特別市金庫에 대한行政事務調查計劃 承認의 件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자금운용실태와서울특별시금고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조사목적

서울특별시 교통·환경·시설물유지관리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재정 확충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현황 및 시금고가 취

<p>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실태 등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제도개선 및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p> <p>I. 조사개요</p> <p>□조사기간 ○'95.10.16~'95.12.31(77일간)</p> <p>□조사 대상 기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서울특별시금고</p> <p>□조사시행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p> <p>□추진경위 ○'95. 8.25—제79회 임시회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금고 자금운용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 7인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가결됨. ○'95. 9. 4—제1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금고 업무체계화 및 관련법령 검토와 시금고 보유자금의 이자율 분석, 타시·도의 금고운영실태 등 위원별 업무분담 ○'95. 9.15—제2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시금고관계공무원 및 은행관계자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었고 위원별 분담사항 진행사항을 검토·분석하였음. ○'95. 9.21—제3차 시금고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금고운영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받아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안 가결 ○'95. 9.28—제4차 본회의에서 이정의의원 외 5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관한 건 채택의결</p>	<p>○'95.10.12—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p> <p>II. 조사실시 계획</p> <p>1. 조사사안의 범위 ○본 업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의 ①항1호 및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금운용실태와 서울특별시금고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 서울특별시의 자금운용현황 및 실태 • 서울특별시 월별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1991~1995) • 공공예금,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자율, 이자액현황(1991~1995) •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건수, 금액, 사유 등(1991~1995) • 상업은행과의 시유재산 임차계약 현황(1991~1995) • 시금고 관련 상업은행의 OCR센타 설치경위, 운영현황, 운영비용 등 ○기타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다.</p> <p>2. 조사방법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요구,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 보고요구 대상기관—서울특별시 재무국 및 서울특별시금고 ○조사위원회가 조사진행 중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신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금융전문가 및 금융종사자,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금고운영의 제도개선을 모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3. 조사일정 ○조사일정표(별지)</p> <p>4.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 시간 ○장소: 위원회회의실 및 피조사기관</p>
--	---

6 (第81回—第1次)

<p>○시간: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p> <p>5. 조사의 보고 및 처리</p> <p>○본 조사가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p> <p>○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나 괴조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조치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 제19조)</p> <p>III. 소요경비</p>	<p>○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증인 등의 지급비용, 공청회 경비 등은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른다.</p> <p>IV. 행정사항</p> <p>○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한다.</p> <p>○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 5명(전문위원1, 행정지원2, 기록지원2)을 배치하며, 본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p>
---	---

(별지)

조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 고
'95. 10~11월중	• 재무국 • 서울특별시금고	위원회 회의실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요구 등	
	"	재무국 서울특별시금고	• 서류확인 등 현장검증	
	"	위원회 회의실	• 증인·참고인 등 출석·신문	
'95. 11~12월중			•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별도계획 에 의함.

※본 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기 및 회수, 공청회 일시, 현장검증 시기 및 방법 등을 의결로 시행한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運營委員會委員長 提案)

(15時 32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運營委員會 金鍾來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議員 안녕하십니까? 江西區 出身 金鍾來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同 決議案은 地方自治法 第118條, 同法 第

125條 및 地方教育自治에 關한法律施行令 第24條와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18條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決算書가 9月 29日附로, 教育監으로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書가 10月 2日附로 우리市議會에 提出되었고, 96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 및 教育費特別會計豫算案이 11月 11日까지 提出될 것이豫想됨에 따라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1994年度 서울特別市 歲入·歲出決算 및豫備費支出 承認의 件과 同法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1996年度 서울特別市豫算案을 審查 處理하고, 地方教育自